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 72

제출년월일: 2006. 11. 3.

제 출 자:대전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·중등교육법 제10조의 개정(2005. 3. 24.)으로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·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공·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징수금액(안 제2조)

-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, 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특성화중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특수목적고등학교·자율학교·각종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.

나. 수업료·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(안 제3조)

- 수업료·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
다. 징수방법(안 제4조)

-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,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.

라. 징수기일(안 제5조)

- 수업료 징수기일은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전으로 할 수 없으나,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함.

마. 수업료 등의 반환(안 제6조)

- 과오납된 수업료 및 입학금의 금액은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.

바. 공고 등(안 제7조)

- 수업료 등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 하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유아교육법」 제25조 및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신・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라. 관련 부서간 합의여부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'06. 9. 19. ~ '06. 10. 9./ 제출된 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유아교육법」제25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·사립의 각급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징수금액)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사립의 유치원(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치원은 제외한다)·초등학교·중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학교에 한한다)·고등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0조 제1항 제6호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특성화고등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정하는 학교에 한한다)·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.
- 제3조 (수업료·입학금의 면제·감액) ①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 - 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.
 -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.
 - ④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.

- 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- 제4조 (징수방법)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(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)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 -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.
 -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 - 1.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.
 - 2.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.
 - ④ 재입학,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,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.
 -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.
- 제5조 (징수기일)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, 당해기 또는 당해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.
 -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.
- **제6조 (수업료 등의 반환)**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.

- ②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.
-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"반환사유"라 한다)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.
- 1. 법령에 의하여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- 2.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3.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4.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5.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④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- ⑤ 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- 제7조 (공고 등)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」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「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」의 규정에 의한다.

[별표1]

수업료 분할 징수표(제4조제1항 관련)

기별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/ [편	상반기		하반기	반기
일자	3.1~5.31	6.1~8.31	9.1~11.30	12.1~익년 2월말

[별표2]

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(제6조제3항 관련)

반환사유발생일	반 환 액	비고
1분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)까지	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	
1분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	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	
입학일을 말한다)의 다음 날	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,	
이후	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	

[참고사항]

관 계 법 령

■ 유아교육법

- 제25조 (교육비용 등) ① 유치원의 설립·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1.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
 - 2. 교육대상 유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여부
 - 3. 당해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 여부
 -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■ 초·중등교육법

- 제10조 (수업료등) ① 학교의 설립·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.
 - ②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,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대전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6.11.28. 교육사회위원회

I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11. 3 대전광역시교육감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162회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3차 교육사회위원회(2006.11.24)

상정, 질의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국장 이치범)

1. 제정사유

유아교육법 및 초·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·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공·사립의 각급 학교 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, 각종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2조)
- 나. 수업료·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다.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,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라. 수업료 징수기일은 당해 분기 또는 월의 개시 10일 전으로 할 수 없으나,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함(안 제5조)
- 마. 과오납된 수업료 및 입학금의 금액은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(안 제6조)
- 바. 수업료 등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함(안 제7조)

Ⅲ. 검토의견(전문위원 : 안문환)

본 개정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·중등교육법 제10조가 2005년 3월 24일 개정되어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·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공·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,

- 사립의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성화 중학교, 특성화 고등학교· 특수목적고등학교·자율학교·각종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고,
-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고, 휴학자에 대하여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,
- 학교의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 부득이한 경우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재입학, 편입학,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 징수방법을 정하였으며,
-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당해 분기 또는 월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으나,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,
-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 오납된 경우 전액 반환하며, 반환 사유를 명시하고, 퇴학처분 및 자퇴자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 하되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개시일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.
- 다만, 유아교육법 및 초등교육법이 지난 2005년 3월 24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이 늦어져 신속한 교육행정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 이라고 사료됨.

Ⅳ. **질 의 요 지**: 생 략

V. **심 사 결 과** : 원안가결

Ⅵ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